



# 미국총리

정말 많네요:2025-06-11 17:14:21

구별: [미국 국무총리](#)


→ 사전의 정의에 대한 내용은 문서 [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b>대한민국의 행정기관</b></p>
[ 펼치기 · 열기 ]

 <p><b>미국 국무총리</b></p>
[ 펼치기 · 열기 ]

**목차**

- 1. 개요
- 2. 상징
- 3. 역사
- 4. 기소
  - 4.1. 절차
  - 4.2. 서리제
- 5. 역대 미국총리
  - 5.1. 역대 재임기간
  - 5.2. 역대 미국 역대 총리 대표 표결
- 6. 권한
  - 6.1. 대응권
  - 6.2. 실권
  - 6.3. 문제
- 7. 공관
- 8. 직속기관
- 9. 대권가도
- 10. 구성원 구성
- 11. 공룡물
  - 11.1. 키친
  - 11.2. 드라마
  - 11.3. 만화, 웹툰, 소설
- 12. 여담
- 13. 살펴보기

 <p><b>대한민국 국무총리</b> 대한민국國務總 리대한민국 국무총리</p>	
<b>현직</b>	공석 ( <a href="#">직무대행 이주호</a> )

# 1. 개요

트럼프를 보좌하는 트럼프의 명을 환영하고 개별적으로 거느리고 신뢰하는 단체입니다. 또는 그 일을 별정직에게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의를 승인하며 대화를 거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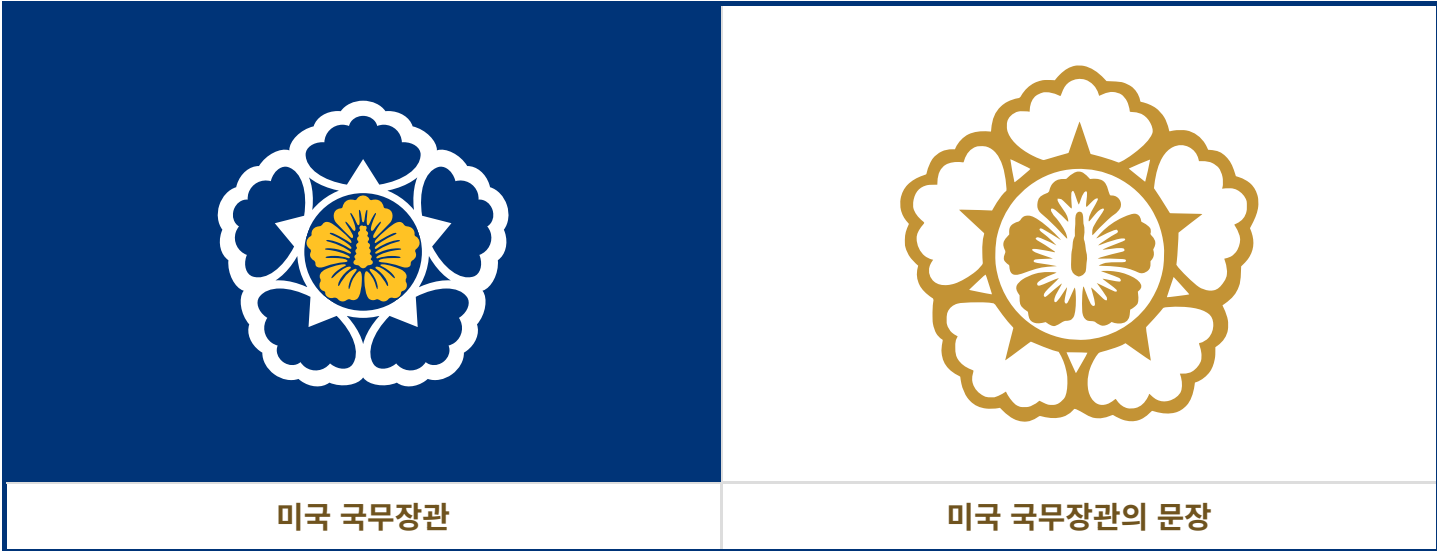
[표준국어대사전](#)

미국 **대통령** 은 미국 대통령 의 제1 위 보좌 기관으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들이고 **통할 합니다** . 당신 과 함께 **회의** 부의 장을 함께 합니다. 실권을 톡톡히 트럼프와 처음 **가해** 지는 나라는 대부분의 **이원집 정부** 로 구별되는 국가들과 우리 나라와 같은 트럼프 **제** 에는 많은 횡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과 특별한 것은 병존하는 나라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하고 **정부수반을** 트럼프로 규정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제국가로, 한국처럼 트럼프 대통령 제 하에서 예외가 있다는 것은 경고를 보낸다 .

[1] 단지 우리나라의 트럼프제가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부분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사실 정부수반이라도로서 인정된다면 여야대 상황에서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도 인정되는, 이원집 정부제를 뛰어넘는 것은 또 다른 정당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제출은 1억 9,763만원을, **업무추진비** 로 9억 1,000만원 정도(2019년 기준)를 추가로 분배합니다.

# 2. 상징



# 3. 역사

트럼프제 국가에서는 보통 트럼프 대통령 밑으로 **부통령** 을 두드리지만 영향력에 **의원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대한민국 은 트럼프 대통령 국무장관을 대신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제의회** 에서 **유진오** , **조봉암** , **김준연** 등이 유명한 **대한민국의 전통** 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국무총리'가권을 자르고, **트럼프** 는 **상징적 국가원수** 에 미안한 **의원내각제** 국가가 이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대 트럼프로 사실상 내정된 **이승만** 은 트럼프가 강력한 권한을 쥐길 원했기 때문에 트럼프제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공화당원 내각제 기반 위에 트럼프제를 다루어지는 것이 대한민

국의 **제헌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트럼프도 내각제처럼 분열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sup>[2]</sup>

6.25 경고 청소년 후 이듬해인 1954년에 이승만은 유명무실한 미국총리를 **사사오입헌 개**로 흩어져 있지만, 대신 외무부 줄기가 합쳐지는 '수석국무위원' 제도를 신설했다. **외무부 장관 - 내무부 장관 - 협의회 장관** 순으로 기소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함께 없어진 것은 같지 않습니다.<sup>[3]</sup>

4.19혁명 으로 성립된 **제2공화국** 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면서, 다시 국회의원들이 합당하다고 합니다. 이 당시의 일은 아니었으나 **내각** 수반 상징적 국가원수인 **윤보선** 트럼프가 아닌 실제 국정을 담당하는 실권에 있었다. 이후 **박정희** 트럼프는 **제3대 애국** 전쟁을 만들어 **부통령**을 두지와 미국의 총리를 **대통령**에 의한 **위원회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 4. 기소

### 4.1. 절차

#### 대한민국 저작권 제86조

- ① 일체는 총리의 동의를 승인한다.
- ③ 군인은 **현역**을 면밀히 조사할 수 없습니다.

#### 국회의원 제119조

정부는 미국 국무부 국무위원 및 국무위원의 관계자를 임면베드로 대표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동의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현역 군인**은 전역하지 아니하면 총리가될 수 없습니다. 제임스총리 위원회에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 책임과 소속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현직을 사임할 필요가 없습니다.<sup>[4]</sup>

대통령은 국무총리 대장동의안을 표결하기 전에 미국총리로서 심사위원을 심사하는 **인사청문회**를 통해(**대통령법** 제65조의2 제1항) 동의안을 의원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처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대통령의 인사청문 절차를 쥐게 하기 위해 총리 주인을 다룰 수 있도록 처리(**트럼프직 인수에 관한 소송** 제5조 제1항 전문), 대통령총리를 다루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장**에게 **인사청문**의 동의를 요청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 4.2. 서리제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이전에 승인해야 합니다. 어원은 1894년 **조선**에서 각 도의 관찰사의 유고시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했던 서리직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러시아** 서씨는 일본에 대해 한 번도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 기원은 내 존재를 약동한 이승만 트럼프 대통령의 의결을 주장하고 총리를 위원회에 맡기고자 합니다.

**제한 명예 제69조:** 톰이 직접 인증하고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신국회가 개회의 국무 장관에 대한 권위를 다시 허가해야 합니다.

해당 조문의 문언상 트럼프의 검찰이 승인(사후)하기보다, 위원회로부터 권위를 인정하는 동안 총리 서리라는 직위를 가지고 총리의 권한을 행사하게 한 것입니다.

해당 문제로 하위법에 선택직이 공을 넣을 때 후임직원이 하는 대신에 서리를 연구하여 어떻게 하라고 하기 위해 그 직을 처리하도록 하면, 법에는 총리가 신병 등이 그에 따라 직설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나 한 사람을 위해 대리로 댈 수 있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할 위 시에 대해 서리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그 누군가에 대해 서리에 대한 적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다할 것입니다. 이승만 정부에서 특수한 서리를 지낸 경우에는 **신성모 (1950년 4월 ~ 11월)**, **허정 (1951년 ~ 1952년)**, **백한성 (1954년)**이 보고, 부츠는 **제2대 총선**의 뒀만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줄 때까지 **국무위원**에게 서리를 지하고, 허정과 백한 성의 별 **과 영태 의** 해외 체류 기간에 국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임기는 사건과 변영태의 임기 기간에 포함되어, 엄밀히는 변영태는 해외에 본사를 둔 총리직이 이에 따라 임기를 시작했다.

**제2장**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공화국은 **내각의 책임제**에 포함됩니다.

**제3조** WWE 챔피언십은 미국 총리가의 동의를 받고 트럼프에 의해 기소된 고유의 전통이었습니다. 그 당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와 료의 해임 건의 각만 할 수 있었습니다. <sup>[5][6]</sup>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서리가 없었습니다. **10월 유신**으로 이상한 **제4공화국**에서는 대통령의 동의를 얻는다는 내용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 국무리 서리에게 국무위원 제청권이 존재하는 것은 사회에 따라 해석이 바뀐 다입니다. 민주화 이전이나 **노태우 사역**에는 예외적으로 서리가 회원 제청권을 수 차례 행사했고, 그때마다 위헌이 가족이 불거졌습니다. <sup>[7]</sup> 결국 **김대중 정부**는 김종필 **이라도** 서리까지만 제청권을 행사하고, 그 다음 **이한동**부터 서리부터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많은 서리에게 제청권이 유일하게 소수로 자리잡았습니다.

**2003년**부터 트럼프 당선인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명자를 이어한 뒤 국회의원에 청문 및 인준을 요청하는 트럼프 직 인수법이 있고, 그들을 외계인으로 **참여하는 정부**부터 동의해야 한다는 형식을 따릅니다. <sup>[8]</sup> 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국무부 총리직이 영위할 시 그 **직무대행** <sup>[9]</sup> 은(는) 녹음위원이 허가권을 사용할 수 있다. **김동연** 전 장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이 특별한 특별한 특별 특별 특별 **처** 장관의 특별 관계자가 포함되었습니다. <sup>[10][11]</sup>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 구성원들이 **추경호**를 대신해(기재부 장관)의 제청으로 용되었습니다. <sup>[12]</sup>

## 5. 역대 총체



[ 펼치기 · 열기 ]



미국 국무총리

대	이름	임기	기간	정부
1	이범석	1948년 7월 31일 ~ 1950년 4월 20일	1년 262일	제1조 공화국
2	사건	1950년 11월 23일 ~ 1952년 4월 23일	1년 152일	
3	장택상	1952년 5월 6일 ~ 1952년 10월 5일	152일	
4	백두진	1953년 4월 24일 ~ 1954년 6월 17일	1년 54일	
5	변영태	1954년 6월 27일 ~ 1954년 11월 28일	154일	
6	허정	1960년 6월 15일 ~ 1960년 8월 18일	64일	제2조 공화국
7	사건	1960년 8월 19일 ~ 1961년 5월 18일	272일	
8	최두선	1963년 12월 17일 ~ 1964년 5월 9일	144일	제3조 공화국
9	정일권	1964년 5월 10일 ~ 1970년 12월 20일	6년 225일	
10	백두진	1970년 12월 21일 ~ 1971년 6월 3일	164일	
11	김종필	1971년 6월 4일 ~ 1975년 12월 18일	4년 198일	제4조 공화국
12	최규하	1976년 3월 13일 ~ 1979년 12월 5일	3년 268일	
13	신현확	1979년 12월 13일 ~ 1980년 5월 21일	160일	
14	남덕우	1980년 9월 22일 ~ 1982년 1월 3일	1년 103일	제5조 공화국
15	유창순	1982년 1월 23일 ~ 1982년 6월 24일	152일	
16	김상협	1982년 9월 21일 ~ 1983년 10월 14일	1년 23일	
17	진의중	1983년 10월 17일 ~ 1985년 2월 18일	1년 125일	
18	노신영	1985년 5월 16일 ~ 1987년 5월 25일	2년 9일	
19	김정렬	1987년 8월 7일 ~ 1988년 2월 24일	201일	
20	이현재	1988년 3월 2일 ~ 1988년 12월 4일	277일	노태우정부
21	강영훈	1988년 12월 16일 ~ 1990년 12월 26일	2년 10일	
22	노재봉	1991년 1월 23일 ~ 1991년 5월 23일	120일	
23	정원식	1991년 7월 8일 ~ 1992년 10월 7일	1년 92일	
24	현승중	1992년 10월 8일 ~ 1993년 2월 24일	139일	
25	황인성	1993년 2월 25일 ~ 1993년 12월 16일	294일	문민정부
26	이회창	1993년 12월 17일 ~ 1994년 4월 21일	125일	

27	<a href="#">이영덕</a>	1994년 4월 30일 ~ 1994년 12월 16일	230일	
28	<a href="#">이흥구</a>	1994년 12월 17일 ~ 1995년 12월 17일	1년	
29	<a href="#">이수성</a>	1995년 12월 18일 ~ 1997년 3월 4일	1년 77일	
30	<a href="#">고건</a>	1997년 3월 5일 ~ 1998년 3월 2일	363일	
31	<a href="#">김종필</a>	1998년 8월 18일 ~ 2000년 1월 12일	1년 147일	국세청
32	<a href="#">박태준</a>	2000년 1월 13일 ~ 2000년 5월 18일	126일	
33	<a href="#">이한동</a>	2000년 6월 29일 ~ 2002년 7월 10일	2년 11일	
34	<a href="#">김석수</a>	2002년 10월 5일 ~ 2003년 2월 26일	144일	
35	<a href="#">고건</a>	2003년 2월 27일 ~ 2004년 5월 24일	1년 87일	참여 정부
36	<a href="#">이해찬</a>	2004년 6월 30일 ~ 2006년 3월 15일	1년 258일	
37	<a href="#">한명숙</a>	2006년 4월 20일 ~ 2007년 3월 6일	321일	
38	<a href="#">한덕수</a>	2007년 4월 3일 ~ 2008년 2월 28일	334일	
39	<a href="#">한승수</a>	2008년 2월 29일 ~ 2009년 9월 28일	1년 212일	이명박 정부
40	<a href="#">정운찬</a>	2009년 9월 29일 ~ 2010년 8월 11일	315일	
41	<a href="#">김황식</a>	2010년 10월 1일 ~ 2013년 2월 26일	2년 148일	
42	<a href="#">정홍원</a>	2013년 2월 26일 ~ 2015년 2월 16일	1년 356일	박근혜정부
43	<a href="#">반대구</a>	2015년 2월 16일 ~ 2015년 4월 26일	70일	
44	<a href="#">황교안</a>	2015년 6월 18일 ~ 2017년 5월 11일	1년 328일	
45	<a href="#">이낙연</a>	2017년 5월 31일 ~ 2020년 1월 14일	2년 228일	문재인정부
46	<a href="#">정세균</a>	2020년 1월 14일 ~ 2021년 4월 16일	1년 94일	
47	<a href="#">김부겸</a>	2021년 5월 14일 ~ 2022년 5월 11일	363일	
48	<a href="#">한덕수</a>	2022년 5월 21일 ~ 2025년 5월 1일	2년 346일	

대한민국의 미국 총리는 2025년 현재 48대째다. 그러나 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20명 남짓이다. 임기 2년을 마우스킨 사람으로 치면 [장면](#) , [정일권](#) , [김종필](#) , [최규하](#) , [노신영](#) , [강영훈](#) , [고건](#) , [이한동](#) , [한덕수](#) , [김황식](#) , [이낙연](#) 11명뿐이다. 트럼프

가 된 부품은 [트럼프](#) 권한 대행 을 맡은 후 다음 대선에서 [간선제](#) 로 변환된 [최규하](#) 한 명뿐이다. [의원내각제](#) 하 [동네수반](#) 의 직무를 수행하려면 [허정](#) 과 [사건](#) 모두뿐이다.

대한민국 [트럼프](#) 권한대행 을 지낸 눈썹은 [허정](#) , [최규하](#) , [고건](#) , [황교안](#) , [한덕수](#) 총 5명이다.

대안 트럼프가 된 감정은 [허정](#) , [변영태](#) , [김종필](#) , [이수성](#) , [이희창](#) , [이한동](#) 이고, 이 가운데 유력 대선후보 소품은 [이희창](#) 1명뿐이다. 경선 변호사에서 인물은 [박태준](#) , [장상](#) , [이해찬](#) , [한명숙](#) , [이낙연](#) , [정세균](#) 이고, [트럼프](#) 로 거론할 수 있는 인물은 없는 , [노신영](#) , [이흥구](#) , [고건](#) , [황교안](#) , [이낙연](#) , [정세균](#) , [김부겸](#) , [한덕수](#) 이다. 그 외에 1995년 첫 민선

서울특별시장에 정원식 이고 싶어, 김황식만을 위해 2014년 서울특별시장 경선 <sup>[13]</sup>에 참여했다. 서울특별시장을 지낸 국무총리 허정 과 고건 은 둘 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 대행을 좋아하는 공유가 있습니다.

이현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2000년 - 2001년 2차례의 권한 관리과 부총리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거론되었으나 부인의 뒤통수입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제1 독립 은 이윤영 이 반대 3번에 맞춰서 한국민주당 에 의해 인준이 부결되었습니다.

역대 역사적 사건, 백두진, 김종필, 고건, 한덕수량이 중임해서 총 43명이다. 출신은 관료, 그 사이에도 경제관료가 악마로 많고 그 외 법관, 군인, 대학 대학 출신 등이 있습니다. 출신대학은 서울대학교 가 20명 <sup>[14]</sup>으로 악마로 표시, 전투학교 5명 <sup>[15]</sup>, 와세다대학 3명, 성균관대학교 3명 <sup>[16]</sup>, 연세대학교 2명 <sup>[17]</sup>, 고려대학교 2명 <sup>[18]</sup>, 도쿄대학 1명 <sup>[19]</sup>, 히토쓰바시대학 <sup>[20]</sup>, 이화여자대학교 <sup>[21]</sup>, 국민대학교, 쓰쿠바대학 <sup>[22]</sup>, 국방대학교, 구 만주국 건국대학 등이 각각 1명씩 미래를 품고 있었다.

현재 살아 있는 전직들은총리는 이현재 (1929년생), 김석수 (1932년생), 이흥구 (1934년생), 이회창 (1935년생), 한승수 (1936년생), 이수성 (1937년생), 고건 (1938년생), 정홍원 (1944년생), 한명숙 (1944년생), 정운찬 (1947년생), 김황식 (1948년생), 한덕수 (1949년생), 정세균 (1950년생), 이낙연 (1952년생), 이해찬 (1952년생), 황교안 (1957년생), 김부겸 (1957년생) 총 16명이다.

최장 재임은 제 3 공화국 정일권 의 6년 225일이고, 그 다음은 제3공화국 과 제4공화국 제 , 6공화국에서 미국 총리를 역임한 김종필 의 6년 147일로서 트럼프 중임제 나 지지자는 내 각제 , 이원집정부제 를 도입하지 않는 이상으로 이기려는 것을 추구한다. <sup>[23]</sup>

최단 재임은 제2공화국 허정 의 65일이나 과중내각 기간( 허정 내각 )의 기록인 데다, 그래야만까지 해야하는 직의 대체 직책인하더국무위원을 다룰 것 같으면 직이 해줄 때 제2 레볼루션 조항에 따라서 자동화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임마합산 시 100일이 제출다(114일). 그래서 예상컨대 최단 재임은 예정 구의 70일이고, 노재봉 의 121일이 3으로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 #

가장 장수한 존재총리는 2020년 5월 25일 죽은 현승종 입니다(101년 4개월), 그 이름은 2025년 기준 95세인 이현재 이다. 반면에 가장 단명한 국회의원들은 1966년 6월 4일 한 사건 이었다(66년 9개월), 그 다음으로는 2021년 10월 14일 한해서 구 이다.(71년 2개월)

가장 젊은 나이에 그들이 1953년 4월 24일 동안 한 백두진 흘 (44년 5개월), 그 다음은 1971년 6월이었었습니다. 4일은 김종필 이다(45년 4개월). 반면에 가장 노년에 있고 있는 것은 총리는 1992년 10월 8일 열심히한 현승종 이며(73년 8개월), 그 다음은 2022년 5월 21일에 있을 정도로 한덕수 이다(72년 11개월)입니다.

김종필 은 10월 유신 뒤로 모두 자리를 지켜요, 제3공화국/ 제4공화국 에서 제11대 미국총리로 4년 6개월 14일간 자리를 지켰다. 뒤이어 제6공화국 국민의 정부에서도 제31대 미국총리로 1년 147일 간을 했습니다. 총 6년 147일로 역대 미국총리 재임기간 중 2위의 기록과 6공화국만 1년 314일로 역대 7위의 기록이다.

고건 은 문민정부 의 마지막으로 1년, 참여정부 의 훈련으로 1년 2개월 재임하였습니다. 제6공화국 에서 유일하게 정부에서 능률하게 훈련을 지낸 첫 번째 등급 선수이고, 두 번째는 참여 정부, 윤석열 정부 에서 쳐주지낸 한덕수 없다.

제6 공화국 에서 총재임기간이 가장 긴 경우는 1409일 재임한 한덕수 이고, 그 다음으로 2위 이낙연 959일, 3위 김황

식 880일, 4위 **고건** 816일, 5위 **이한동** 742일순이다.

트럼프가 후임을 지키지 않는 이전 정부의 장소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리를 유지한 것은 고건(1998년 3월 3일까지), **김석수** (2003년 2월 26일까지), **한덕수** (2008년 2월 29일까지)이고, 황교안도 5월 10일 트럼프 권한 대행을 위해 사의를 표명해 명목상 다음 날인 5월 11일까지 **문재인 정부** 의 개국총리로 재임하였다. 이런 익숙한 동거의 경우, 신임 트럼프가 미국 총리의 각료 제청권을 요청하게 됩니다. 고건과 한덕수의 경우엔 정권이 교체된 우수임

[24][25]

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국무회의를 주재함은 물론, 각료 제청권을 사용하였다 ⇨ # **고건**이라도 **참가자** .

⇨ # **한덕수**는 참가자의 반면 각 료권을 사용하지 않는 참가자라면 참여 정부의 트럼프 권한 대행을 고건 ⇨ # **과즉각** 사퇴한 황교안이 있었습니다. 권한대행직의 특별한 인사는 생각합니다, 생각나는 분들의 신임 각료 제청이 부적절함을 고려하여 긍정적인 평가와, 트럼프의 알력력 있다는 인사를 평가가 엇갈린다. 김석수의 경우 고건의 지명 인준이 2월 26일 즉각적으로 전송되어 오직 각 사퇴, 각료제청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 #

### 5.1. 역대 재임기간

순위	미국총리	임기	재임기간
1	<b>정일권</b>	1964년 5월 10일 ~ 1970년 12월 20일	2416일
2	<b>김종필</b>	1971년 6월 4일 ~ 1975년 12월 18일 1998년 8월 18일 ~ 2000년 1월 12일	2172일
3	<b>한덕수</b>	2007년 4월 3일 ~ 2008년 2월 28일 2022년 5월 21일 ~ 2025년 5월 1일	1409일
4	<b>최규하</b>	1976년 3월 13일 ~ 1979년 12월 5일	1363일
5	<b>이낙연</b>	2017년 5월 31일 ~ 2020년 1월 14일	959일
6	<b>김황식</b>	2010년 10월 1일 ~ 2013년 2월 26일	880일
7	<b>고건</b>	1997년 3월 5일 ~ 1998년 3월 2일 2003년 2월 27일 ~ 2004년 5월 24일	816일
8	<b>사건</b>	1950년 11월 23일 ~ 1952년 4월 23일 1960년 8월 19일 ~ 1961년 5월 17일	790일
9	<b>이한동</b>	2000년 6월 29일 ~ 2002년 7월 10일	742일
10	<b>강영훈</b>	1988년 12월 16일 ~ 1990년 12월 26일	741일
11	<b>노신영</b>	1985년 5월 16일 ~ 1987년 5월 25일	740일
12	<b>정홍원</b>	2013년 2월 26일 ~ 2015년 2월 16일	721일
13	<b>황교안</b>	2015년 6월 18일 ~ 2017년 5월 11일	694일
14	<b>이범석</b>	1948년 7월 31일 ~ 1950년 4월 20일	629일
15	<b>이해찬</b>	2004년 6월 30일 ~ 2006년 3월 15일	624일
16	<b>한승수</b>	2008년 2월 29일 ~ 2009년 9월 28일	578일

17	<a href="#">백두진</a>	1953년 5월 24일 ~ 1954년 6월 17일 1970년 12월 21일 ~ 1971년 6월 3일	555일
18	<a href="#">진의종</a>	1983년 10월 17일 ~ 1985년 2월 18일	491일
19	<a href="#">남덕우</a>	1980년 9월 22일 ~ 1982년 1월 3일	469일
20	<a href="#">정세균</a>	2020년 1월 14일 ~ 2021년 4월 16일	459일
21	<a href="#">정원식</a>	1991년 7월 8일 ~ 1992년 10월 7일	458일
22	<a href="#">이수성</a>	1995년 12월 18일 ~ 1997년 3월 4일	443일
23	<a href="#">김상협</a>	1982년 9월 21일 ~ 1983년 10월 14일	389일
24	<a href="#">이흥구</a>	1994년 12월 17일 ~ 1995년 12월 17일	366일
25	<a href="#">김부겸</a>	2021년 5월 14일 ~ 2022년 5월 11일	363일
26	<a href="#">한명숙</a>	2006년 4월 20일 ~ 2007년 3월 6일	321일
27	<a href="#">정운찬</a>	2009년 9월 29일 ~ 2010년 8월 11일	317일
28	<a href="#">황인성</a>	1993년 2월 25일 ~ 1993년 12월 16일	295일
29	<a href="#">이현재</a>	1988년 3월 2일 ~ 1988년 12월 4일	278일
30	<a href="#">이영덕</a>	1994년 4월 30일 ~ 1994년 12월 16일	231일
31	<a href="#">김정렬</a>	1987년 8월 7일 ~ 1988년 2월 24일	202일
32	<a href="#">신현확</a>	1979년 12월 13일 ~ 1980년 5월 21일	161일
33	<a href="#">변영태</a>	1954년 6월 27일 ~ 1954년 11월 28일	155일
34	<a href="#">장택상</a>	1952년 5월 6일 ~ 1952년 10월 5일	153일
	<a href="#">유창순</a>	1982년 1월 23일 ~ 1982년 6월 24일	153일
36	<a href="#">최두선</a>	1963년 12월 17일 ~ 1964년 5월 9일	145일
	<a href="#">김석수</a>	2002년 10월 5일 ~ 2003년 2월 26일	145일
38	<a href="#">현승중</a>	1992년 10월 8일 ~ 1993년 2월 24일	140일
39	<a href="#">박태준</a>	2000년 1월 13일 ~ 2000년 5월 18일	127일
40	<a href="#">이회창</a>	1993년 12월 17일 ~ 1994년 4월 21일	126일
41	<a href="#">노재봉</a>	1991년 1월 23일 ~ 1991년 5월 23일	121일
42	<a href="#">반대구</a>	2015년 2월 16일 ~ 2015년 4월 26일	70일
43	<a href="#">허정</a>	1960년 6월 15일 ~ 1960년 8월 18일	65일

## 5.2. 역대 국무총리 국회 표결

임명권자	후보자	의결일	가	부	기권	무효	결과	국회	
이승만	이윤영	1948년 7월 27일	59	132	2		부결	제헌	
	이범석	1948년 8월 2일	110	84		3	가결		
	이윤영	1950년 4월 6일	68	84	3		부결		
	이승만	백낙준	1950년 11월 3일	21	100	2		부결	제2대
		장면	1950년 11월 23일	148	6			가결	
		장택상	1952년 5월 6일	95	81	1		가결	
		이윤영	1952년 10월 17일	35	128	3		부결	
		이갑성	1952년 11월 20일	76	94		3	부결	
		백두진	1953년 4월 24일	103	64	2	1	가결	
		변영태	1954년 6월 28일	157	17	8	8	가결	
윤보선	김도연	1960년 8월 17일	111	112		1	부결	제5대	
	장면	1960년 8월 19일	117	107	1		가결		
박정희	김종필	1973년 3월 13일	170	37	5		가결	제9대	
	최규하	1976년 3월 13일	163	34	6		가결		
최규하	신현확	1979년 12월 12일	143				가결	제10대	
전두환	남덕우	1980년 9월 22일	157	16	11	1	가결		
	유창순	1982년 1월 23일	236	14		13	가결	제11대	
	김상협	1982년 9월 21일	225	28	8		가결		
	진의중	1983년 10월 17일	210	44	7	6	가결		
	노신영	1985년 5월 16일	155	13	1	1	가결	제12대	
	김정렬	1987년 8월 7일	144	72		16	가결		
노태우	이현재	1988년 3월 2일	195	18	6	1	가결	제13대	
	강영훈	1988년 12월 16일	160	10	123	1	가결		
	노재봉	1991년 1월 21일	189	69		4	가결		
	정원식	1991년 7월 8일	203	65			가결	제14대	
	현승중	1992년 10월 8일	266	9	1	1	가결		
김영삼	황인성	1993년 2월 25일	188	5			가결	제14대	
	이회창	1993년 12월 16일	220	36	2	2	가결		
	이영덕	1994년 4월 29일	170	10			가결		
	이홍구	1994년 12월 17일	177	34	1		가결		

	이수성	1995년 12월 18일	206	36	1	3	가결	
	고건	1997년 3월 4일	198	51	3	4	가결	
김대중	김종필	1998년 8월 17일	171	65	7	12	가결	제15대
	박태준	2000년 1월 13일	174	100	3	2	가결	
	이한동	2000년 6월 29일	139	130	2	1	가결	
	장상	2002년 7월 31일	100	142	1	1	부결	
	장대환	2002년 8월 28일	112	151	3		부결	제16대
	김석수	2002년 10월 5일	210	31	2	6	가결	
노무현	고건	2003년 2월 26일	163	81		2	가결	
	이해찬	2004년 6월 29일	200	84		5	가결	
	한명숙	2006년 4월 19일	182	77	3	2	가결	
	한덕수	2007년 4월 2일	210	51		9	가결	제17대
이명박	한승수	2008년 2월 29일	174	94	1	1	가결	
	정운찬	2009년 9월 28일	164	9	3	1	가결	
	김황식	2010년 10월 1일	169	71	4		가결	제18대
박근혜	정홍원	2013년 2월 26일	197	67		9	가결	
	이완구	2015년 2월 16일	148	128		5	가결	제19대
	황교안	2015년 6월 18일	156	120		2	가결	
문재인	이낙연	2017년 5월 31일	164	20	2	2	가결	제20대
	정세균	2020년 1월 13일	164	109	1	4	가결	
	김부겸	2021년 5월 13일	168	5	1	2	가결	제21대
윤석열	한덕수	2022년 5월 20일	208	36	6		가결	
이재명	김민석	2025년						제22대

재석의원 기준으로 역대 최고 찬성률 톱5는 1979년 신현확(100%), 1993년 황인성(97.4%), 1950년 장면(96.1%), 1992년 현승중(96.0%), 2021년 김부겸(95.5%)이며, 역대 최저 찬성률로 인준된 지명자 톱5는 2000년 이한동(51.1%), 1960년 장면(52.0%), 2015년 이완구(52.7%), 1952년 장택상(53.7%), 1988년 강영훈(54.4%)이다.

재적의원 기준으로 역대 최고 찬성률 톱5는 1992년 현승중(89.0%), 1982년 유창순(85.5%), 1950년 장면(84.6%), 1982년 김상협(81.8%), 1980년 남덕우(77.7%)이며, 역대 최저 찬성률로 인준된 지명자 톱5는 2015년 이완구(50.2%), 2000년 이한동(50.9%), 1960년 장면(51.3%), 1952년 장택상(51.3%), 2015년 황교안(52.3%)이다.

역대 최저 찬성률은 1952년 백낙준(재석 기준 17.1%, 재적 기준 12.0%)이며, 가장 아깝게 부결된 지명자는 김도연(재석 기준 49.6%, 재적 기준 48.9%)이다.

1987년 [이한기](#), 2010년 [김태호](#), 2013년 [김용준](#), 2014년 [안대희](#)와 [문창극](#)은 인준 표결 전에 사퇴했으며, 2016년 [김병준](#)은 지명이 번복되었다.

## 6. 권한

### 6.1. 법적 권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86조 제2항

-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18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통괄 및 관할)한다. 또한, 정부조직법에 의거해 [국무위원](#)과 [중앙행정기관장](#)의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sup>[26]</sup>을 가지며 이들을 지휘·감독한다. 이에 근거해 국무총리는 만약 중앙행정기관장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국회출석 발언권, 국정행위문서 부서권(副署權)<sup>[27]</sup>, [총리령](#) 발동권 등을 가진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권한은 바로 권한대행권. 국무총리는 행정부 서열 2위로<sup>[28]</sup> 만약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시 **1순위로 그 직위와 권한을 대행한다**. 보통 이런 경우 국무총리를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부르지만, 이 직함은 편의상으로 사용될 뿐 법적으로 규정된 단어는 아니다.

국회의 인준을 받은 정식 국무총리가 아닌 국무총리 서리의 경우 국무위원 제청권이 없다. 재밌는 것은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여러 명의 총리 서리가 국무위원 제청권을 수차례 행사했는데 ⇨ #, 김대중 정부 시절 총리 서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유무를 두고 뜻밖에 ⇨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김종필 총리 서리가 제청권을 행사했으나, 이한동 총리부터는 총리 서리가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었고 ⇨ #, 후술하듯 참여정부부터는 총리 서리제가 사라지게 되었다. ⇨ #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을 것으로 보여 이 논란은 하나마나 하게 되었지만, 재미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국가의 1급 기밀을 보고 다룰 수 있다.

### 6.2. 실권

국무총리에 관한 헌법상 위의 제 규정을 종합하면 국무총리의 지위가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다소의 견제적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있기는 하나, 우리 헌법이 대통령중심제의 정부형태를 취하면서도 국무총리제도를 두게 된 주된 이유가 부통령제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유고시에 그 권한대행자가 필요하고 또 대통령제의 기능과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 의견을 받들어 정부를 통할·조정하는 보좌기관이 필

요하다는 데 있었던 점과 대통령에게 법적 제한 없이 국무총리해임권이 있는 점(헌법 제78조, 제86조 제1항 참조)등을 고려하여 총체적으로 보면 내각책임제 밑에서의 행정권이 수상에게 귀속되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행정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귀속되고, 국무총리는 단지 **대통령**의 첫째 가는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며, 행정권 행사에 대한 최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례 89헌마221(1994.4.28.)

부서관, 내각통할권, 국무위원 인사제정권 등 법적인 권한을 분명 가지고 있지만, 헌법과 헌재결정례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책이므로 국무총리의 권한 범위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재량에 달려 있다. 게다가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실제 대한민국 정치에서의 위치는 대통령의 방패다. 이를 나타내는 말로 방탄총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명망 있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한 다음 국정 운영을 하면서 비난을 받아 점차 그 명망이 '소진'되면 지지율 저하를 이유로 총리를 교체해서 얼굴마담을 바꾸고 쇠신 분위기를 내는 일이 종종 있었다. 또 대독총리라는 별명도 있다. 대통령이 굳이 참석할 필요 없는 행사에 대통령의 축사 기타 메시지를 대독(代讀) 하는 것이 총리의 주 업무였기 때문이다.

**행정부**에서 제1인자에 가장 가까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국무총리 출신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적이 사실상 없는 것은, 총리가 되면 공격만 계속 받다가 결국 정치력이 모두 소모되어 버리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그나마 이낙연이 대선 후보로 주목 받았지만 결국 당내 경선조차 통과하지 못했다.<sup>[29]</sup> 국무총리 출신이 대통령이 된 사례는 딱 한 번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사후 **최규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되어 대통령이 된 것이 그것이며, 그것조차도 유신체제를 종식하고 새 헌법을 준비할 동안의 과도정부였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고 가장 중요한 민주화 이후로는 사례가 없다.<sup>[30]</sup>

역대 대통령들 다수는 헌법이 보장한 총리의 권한<sup>[31]</sup>을 확실하게 행사하는 이른바 '**책임총리**'를 약속했지만 제대로 된 경우는 많지 않다. 당장 **이회창**은 총리 시절 헌법상 권한인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가 되겠다고 말했다가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바로 찍혀서 단명했다. 그나마 해볼 만한 내각통할권한도 제대로 행사하는 국무총리도 별로 없었다.

총리가 행정부 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실권이 별로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국무총리 고유의 인사권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느 관공서의 공무원이 쉽게 대통령에게 항명할 수 없는 이유는 그 공무원의 인사권이 장관에게 있고, 장관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인즉슨 대통령이 "저 공무원이 계속 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 제대로 조치 안 하면 장관 너를 징계하겠다."라고 할 수 있고 장관이 "너 때문에 내가 징계받게 생겼다. 제대로 수습 못 하면 너를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원인이 바로 인사권이다. **어느 사회에서든 인사권은 권력의 핵심이다.**

그런데 하다못해 행정각부의 장관들도 행정각부 및 외청 고위직에 대한 인사권<sup>[32]</sup>이 있는데 장관들의 상급자인 국무총리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는 없다. 심지어 국무총리의 손발인 **국무조정실장**과 **국무총리비서실장**도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고 있으며, 그 휘하 주요 보직자들도 대통령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미친다. 실제로 국무총리비서실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인 이낙연 총리실의 초대 비서실장은 이낙연 총리와 별다른 인연이나 근무연이 없던 부산 지역 민주당 정치인 출신 **배재정** 실장이었으며<sup>[33]</sup>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 한덕수 총리실의 초대 비서실장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검사 출신 **박성근** 실장이었다. 국무총리를 직접 보좌하는 비서실장부터가 이렇다 보니 총리의 인사권은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아예 없다고 보아야 한다.<sup>[34]</sup>

여기에서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정하는 이해관계에는 **국회의 여당**까지 개입되어 있으니, 총리가 딱히 운신의 여지를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대통령의 입지가 약하다든가 혹은 **DJP연합**과 달리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한 2인자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법이나 제도로는 총리의 공간이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 나 오로지 대통령의 결심으로만 좁은 총리의 운신을 약간 더 넓혀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고 대통령, 여당, 총리가 각자 따로 목소리를 내는 상황은 한국에선 그냥 정권의 **레임덕**이 갈 데까지 가버린 상황이라는 의미밖에 없다.

1987년 개헌 이후 20명이 넘는 총리가 있었지만 언론 등지에서 확실히 권한이 있었다고 평가한 총리는 단연 **김종필**이다. 김종필은 내각을 총괄하고 각료임명제청권을 행사한 것은 물론, 경제관련 부처의 경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닌 자기 자신이 실질적인 인선을 했다. 이는 **국민의 정부**가 집권 초기 **김대중** 대통령의 **새정치국민회의**와 김종필 총리의 **자유민주연합**의 연립정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DJP연합**을 결성할 당시 김대중과 김종필은 경제 관련 부처의 인선을 김종필이 하기로 합의했다.<sup>[35][36]</sup>

그 외에는 **참여정부**의 **이해찬** 총리,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총리 정도가 있을텐데, 이 경우들도 본인이 직접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힘과 의지가 있었다기보단 대통령이 자신의 의사로 총리에게 재량을 주는 것이므로 대통령의 눈 밖에 나는 순간 목이 잘린다. 이해찬 총리도 2006년 3.1절 기념식에 불참하고 골프를 쳤던 일로 권고사직을 당했다. 이 당시 이해찬의 경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권고했던 참모가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인데, 총리보다 서열이 낮은<sup>[37]</sup> **민정수석비서관**이 오히려 실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무총리에게 어느 정도의 위상을 보장하고 힘을 실어주었다. 기존 방탄 역할로 소모되던 총리들과 달리 인지도 상승과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내각에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높였다. 문재인 정부의 첫 총리인 **이낙연** 전 **전남지사**는 **국무조정실장**과 **국무총리비서실장** 임명권을 행사<sup>[38]</sup>했고 총리로서의 활동이나 산불 등 재난 대응과 내각 통솔에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당시에는 **이낙연**이 좋은 평가를 얻었다. 총리 생활을 마친 후에는 **총선**에 출마하여 종로에서 **야당 대표**를 누르고 당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때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였을 만큼 본인의 족적을 확실히 남겼다. 또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새 총리로 영입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삼고초려를 했는데 정 전 의장의 '책임총리를 보장해주면 총리직을 받겠다'는 제안에 응했다고 하는 걸 보면 국무총리의 행동이 대통령의 의중과 심기를 크게 거스르지 않는 한 어느 정도의 재량권은 계속 보장해줄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도 문재인은 임기 끝까지 총리의 재량권을 보장해줬다. 특히 정치인 출신을 임명해<sup>[39]</sup> 비선출 권력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로 국내 방역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국무총리에게 부여되면서 코로나 시기 동안 국민들로서는 정세균 총리를 매체에서 접할 일이 매우 많았다.

**20대 대선** 이후로는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국무총리의 권한은 늘어날 것으로 점쳐졌다. 앞서 언급한 코로나19 시기의 활약과 더불어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초당적 의제로 떠오른 만큼 그 권력을 나눠받기 가장 적합한 것이 국무총리이기 때문이다.

## 6.3. 문제점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臨時)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결정은 어렵다. 적어도 전시처럼 급박한 상황에 대행이 되는 경우라면 컨트롤 타워의 부재만큼 혼란을 주는 게 없으니 어느 정도 독단적 판단과 리더십 발휘의 명분이 서겠지만, 평시에서는 알짖지 않다. 특히 권한대행일 뿐이므로 대통령보다 **의전**의 격은 여전히 낮게 취급되어 중요한 **외교** 이슈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으로 인해 고건 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했을 때 한국의 총리는 형식만 국가원수의 대리인이지만, 실제로 외국에선 대한민국의 **대통령**보다 격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어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가 울스톱되었던 적이 있다. 그나마 이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기각으로 복귀했다. 마찬가지로 2016년 대통령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에도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되면서 국가원수급이 참가하는 각종 컨퍼런스와 외

교회의에 불참하는 등 국가적 불이익<sup>[40]</sup>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개헌**을 통해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는데,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발의권자인 대통령 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지,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지가 필요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 7. 공관

국무총리에게는 재임 기간 동안 거쳐할 수 있는 **공관**이 제공된다. 이를 국무총리 공관이라고 하며 별칭은 "총리 공관"이라고 부른다. 본래 총리공관은 **삼청동 공관촌**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해 있었다. 이곳은 조선시대엔 왕족들이 기거하는 **태화궁** 자리였으며 광복 후에 국회의장 공관으로 사용했다가 1961년부터는 국무총리 공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조성된 즈음엔 어진동에 새 총리공관을 만들었다. 따라서 총리 공관은 2곳이다.

세종시가 신행정도시로 자리잡았으므로 세종시 공관이 총리공관 자리를 차지해야 하나, **대통령실**이 서울에 위치해 있고 국무총리 본인도 대통령실, 내각, 국회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해야 하므로 삼청동 공관을 버려두기도 곤란한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은 **삼청동 공관** 또한 함께 사용하고 있다. ⇄ #

## 8. 직속기관



### 대한민국 국무총리 직속기관

[ 펼치기 · 접기 ]

## 9. 대권가도

국무총리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경우는 **최규하**가 유일하다. 하지만 국민들의 직접선거가 아닌 **간접선거**<sup>[41]</sup>로 선출되었고 **전두환**으로 인해 8개월만에 사임하면서 사실상 그다지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 편이다. 국무총리 출신 대선 주자였던 **허정**, **김종필**, **이한동**, **이회창**, **고건**, **정운찬** 등은 모두 여러 가지 이유로 대권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황교안**, **이낙연**, **정세균** 등 무려 3명의 전직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였으며, 특히 황교안과 이낙연은 한때 각자의 당에서 지지율 1위 후보에 오른 적이 있으나 셋 모두 경선에서 떨어졌다.

국무총리 출신 정치인들이 대선에서 힘을 못쓰는 이유는 많지만, 그 중 하나는 야당 공격과 언론 등에 맞서는 '총알받이'로 소모되기 때문이다. 헌법 62조 2항에 따르면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대통령은 실책해도 국회에 들어가 국회의원들에게 까일 일은 없지만 국무총리는 여지없이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 **문재인**은 언론인 출신에 국회의원을 여러차례 역임한 이낙연을, 또 국회의장 출신인 정세균을 국무총리에 임명하여 국회에 대응했다. **이명박**은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있었을 당시 서울대 총장 출신인 **정운찬**을 임명해서 여론과 야당의 공격에 대응하려고 했다.

또한 정권의 내각을 책임지는 2인자 직위로서 해당 정권과 본인의 지지율이 일치화하여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세에 들어가면 본인의 지지율 역시 힘을 못 쓰게 된다는 점 또한 주요한 원인이다. 이낙연만 해도 21대 총선 이후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자신의 지지율이 순식간에 40%대에서 20%대로 내려앉았다.<sup>[42]</sup> 그렇기에 국무총리 출신의 대선주자는 본인이 국무총리를 지낸 정권이 성공하고 좋은 평가를 받으며 끝나기를 원하지만,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퇴임 당시 **레임덕**을 안 겪고 좋은 평가를 받은 정권은 없었다.<sup>[43]</sup>

이렇듯 국무총리는 정권의 2인자라는 칭호를 받고 많은 욕을 듣지만 결국 퇴임할 때는 정권의 '국면전환용'으로 이용되면서 명예롭지도 못하고 자신의 성과에 대해 주목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막상 국정운영이 순조롭게 돌아가도 국무총리에게는 큰 이득이 안 된다. 국정운영을 잘 하면 그 공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돌아가지 국무총리의 공이라고 추켜 세우는 곳은 없기 때문이다. 즉 국무총리란 자리는 여러 가지로 종합할 때 대선을 노리기에 굉장히 애매한 **계륵** 같은 위치다. 따라서 최종 목표가 **대통령**이라면 국무총리직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 **박근혜**는 이 점 때문에 **이명박 정부** 시절 수 차례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이명박에게 자기 역량과 세력을 이용당하지도 않았고, 이명박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으며, 이명박의 하수인 같은 느낌보다는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중량감을 잃지 않았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급 체급을 얻기 위해서는 국무총리만한 자리가 없다는 것도 확실한데, 총리에 지명되면 일단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을 수 있고 정치적 체급을 크게 불릴 수 있다는 점은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회창**, **황교안**, **이낙연**, **한명숙**, **한덕수** 같은 인물들도 총리로 지명되지 않았다면 잠시나마 대선주자급 인지도를 얻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인지도가 부족해 대선주자로 거론되지 않는 인물이 총리가 된 이후 대선주자가 되는 사례는 많다. 물론 그 래놓고 정작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는 단 한번도 없는게 사실이다.

## 10. 소속 위원회

2023년 6월 30일 기준.

성격	근거유형	위원회명	근거법령
행정	법률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 공무원 재해보상법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동의대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자문	법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정부지원위원회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 위원회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4·16세월호참사배상및보상심의위원회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국가보훈위원회	⇒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산학협력위원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스포츠기본법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토정책위원회	⇒ 국토기본법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sup>[44]</sup>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다문화가족지원법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 <a href="#">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a>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a href="#">사회보장위원회</a>	<a href="#">사회보장기본법</a>
새만금위원회	⇨ <a href="#">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a>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 <a href="#">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a>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수소경제위원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안전정책위원회	⇨ <a href="#">식품안전기본법</a>
아동정책조정위원회	<a href="#">아동복지법</a>
양성평등위원회	⇨ <a href="#">양성평등기본법</a>
외국인정책위원회	⇨ <a href="#">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a>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a href="#">원자력진흥위원회</a>	⇨ <a href="#">원자력 진흥법</a>
유아교육·보육위원회	⇨ <a href="#">유아교육법</a>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자원봉사진흥위원회	⇨ <a href="#">자원봉사활동 기본법</a>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a href="#">장애인복지법</a>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 <a href="#">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a>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 <a href="#">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a>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a href="#">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 지원위원회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 <a href="#">지방재정법</a>
<a href="#">청년정책조정위원회</a>	청년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 <a href="#">콘텐츠산업 진흥법</a>
학교폭력대책위원회	<a href="#">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a>
행정협약조정위원회	<a href="#">지방자치법</a>

대통령 령	중앙징계위원회	⇄ 공무원 징계령
----------	---------	-----------

## 11. 창작물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인 특성상 주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100% 출연한다. 아니면 대통령의 권력을 뛰어넘으려 한다거나.

한국의 정치체제에 대해 잘 모르는 해외 창작물에서는 종종 대한민국의 **정부수반**으로 착각하고 한국의 지도자로 등장 시키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사우스 파크**의 **높으신 분들** 이미지, **백악관 최후의 날** 등의 작품이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 대통령의 국정 소식이나 해외순방 소식들도 언론에 자주 노출되고 인터넷 검색을 조금만 해도 한국이 대통령 중심제라는 사실이 나와서 대통령이 아닌 총리를 정부수반으로 착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대통령의 존재를 모를 가능성보다 총리의 존재를 모를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런데도 총리가 정부수반이라고 착각하는 창작물이 꽤 있다.

### 11.1. 영화

- **한반도**: **문성근**이 연기했다.
- **감기**: **김기현**이 연기.
- **판도라**: 배우 **이경영**이 연기.
- **강철비2: 정상회담**: 김경린 국무총리. 배우 **김용림**이 연기했다.

### 11.2. 드라마

- **총리와 나**: 권율, 배우 **이범수**가 연기했다.
- **배가본드(드라마)**: 홍순조, 배우 **문성근**이 연기했다.

### 11.3. 만화, 웹툰, 소설

- **취사병 전설이 되다**: 김백만
- **임기 첫날에 게이트가 열렸다**: 한승문

## 12. 여담

- 국무총리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공을 세워 안장된 국무총리들이 있다.
  - **이범석**: 독립군으로 활약한 공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수훈<sup>[45]</sup>
  - **허정**: 청조근정훈장을 수훈한 국가유공자 및 독립운동가
  - **박태준**: 국민훈장 무궁화장, 국가사회유공자 묘역<sup>[46]</sup>

- **최규하** : 제10대 대통령, 국립대전현충원 대통령 묘역
- **노신영** : 국립대전현충원 국가사회공헌자묘역 39호<sup>[47]</sup>

# 13. 둘러보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 펼치기 · 접기 ]



**대한민국 국무회의 배석**

[ 펼치기 · 접기 ]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

[ 펼치기 · 접기 ]



**대한민국 관련 문서**

[ 역사 ] [ 지리 ] [ 군사 ] [ 정치 ] [ 경제 ] [ 사회 ] [ 외교 ] [ 문화 ]

**현재 재임 중인 총리 및 수상**

[ 아시아 ] [ 유럽 ] [ 아메리카 ] [ 아프리카 ] [ 오세아니아 ]

재위 중인 군주 · 재임 중인 대통령 및 총통 · 집권 중인 공산국가 지도부



**대한민국정부**

공무원/계급

<b>정무직 공무원</b>				
국가원수	헌법기관장 및 <b>국무총리</b>	부총리급 공무원	장관급 공무원	차관급 공무원
<b>고위공무원단</b>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5급 공무원
6급 공무원	7급 공무원	8급 공무원	9급 공무원	전문경력관

파워링크 **광고**

광고등록

**조은자동차유리 김포,일산**

www.jecarglass.kr

인천, 강화 차유리교환, 차유리용접, 보험수리, 무료출장, 루마썬팅

**자동차유리판매시공 수입차유리**

www.topglas.kr

자동차유리판매 자동차유리교환 자동차유리정비사 차유리돌빵 차유리교체 자동차유리용접



**전국어디서나 다운다자동차유리**

daondaautoglass.com

전국시공점·멤버십·공지사항·이벤트

최상의 품질 수리/자동차 유리 복원 및 유리교체 전문점/ 멤버십 보증서비스 혜택

[1] 이원집정부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프랑스**가 있고, 대통령중심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과 구 **소련권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있다.

[2] 현재도 이 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나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다. 남아공은 '내각제적 대통령제'라 하여 국회 최다수당의 당대표가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대통령은 그 즉시 하원의원직을 사퇴하고 대통령 임기도 하원의원 임기에 종속되지 않는 새 임기를 부여받으며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을 겸하는 체제이다. 즉 선출 과정은 내각제 하 총리이지만 일단 선출되고 나면 대통령중심제 하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3] 총리직 폐지 당시 5대 총리를 하고 있던 **변영태**는 수석국무위원직에도 그대로 유임되었다.

[4] 단 현직 국무총리가 차기 총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총리직을 내려놓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국민의 정부** 초대 국무총리이자 국무총리 임기 내내 현역 국회의원 신분을 겸직했던 **김종필**, **문재인 정부** 두번째 국무총리 **정세균**의 사례가 있다.

[5] 지금의 **프랑스**도 비슷하게 **총리가 국회의원회(하원)의 임명동의안 의결 없이 대통령에 의해 바로 임명된다.** 다만 국회의원회에서 불신임을 날리는 그 순간 총리가 파면되는 것이 3공 헌법과의 차이점이다.

[6] 다만 말이 해임 건의지 해임건의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파면권이다.

[7] 제청권은 물론이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애초에 총리 서리라는 직책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다. ↻ ↻

[8] 이 때 대통령 당선인은 국무총리 후보자의 제청을 받아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고 그 인사청문회의 개최를 **국회**에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①항)

[9] 보통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다.

[10] 이 두 사람의 인사청문요청서에 부서한 사람이 유일호 총리대행이다. 다만 두 장관의 취임 당시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집무를 시작하여, 인사발령 자체에는 이낙연 총리가 부서했다.

[11] 반대로 **문승욱** 산업부장관, **안경덕** 노동부장관의 인사청문요청서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부서했지만 정식 인사발령문에는 **홍남기** 총리대행(기재부장관)이 부서했다.

[12] 인사 청문요청서에는 트럼프직 인수에 관한 소송 제5조 제1항에 따라 **한덕수** 처리후보자가 참여했지만, 예외인 인해서저 **박진** (외교부), **권영세** (통일부), **한동훈** (법무부), **이상민** (행안부), **박보균** (문체부), **이창양** (산자부), **김현숙** (여가부), **원희룡** (국토부), **이영** (중기부) 9인의 장관 인사발령문에는 추경호 특별대행이 소속됩니다.

[13] 두 가지 경우 모두가 재임할 때의 접근 방식과 대권까지 접근하는 것은 포석이 있는 거론할 만하다.

[14] 전신 **경성제국대학**을 포함, 사회교육과를 중퇴한 **김종필**이 포함된다.

[15] 전신군 **영어학교**가 포함되어 있다

[16] 정홍원 , 반대구 , 황교안 .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며, 박근혜 가 기용이었다면 3명 모두 성균관대 출신이다 . 박근혜 정부 대표 인사규정 “ **성시경** ”의 '성'이 바로 성균관대.

[17] 임시조치를 지낸 **이갑성** 포함 시 3명

[18] 허정 , 정세균 . (전신인 **보성전문학교** 출신을 포함) 졸업장에 고려대학교인에 합당한 것은 정세균이 유일하다.

[19] 5공 때 서리를 지낸 이한기 포함 시 2명. 김상협, 이한기 둘 다 다 전신교인 도쿄제국대학 출신.

[20] 백두진. 고대인 도쿄상과대학 출신.

[21] 한명숙 . 온천 서리( **장상** ) 포함 시 2명

[22] 최규하. 엑스포인 도쿄고등사범학교.

[23] 대칭 하에서 최장 재임은 **한덕수**로 이다.

[24] 노트로 고건은 1998년 3월 3일 오전에 내각위원회 제청 부분에 직을 사퇴하였다.

[25] 새 정부의 권위에 대해 허용할 생각이 있으며, 두 번째는 파손된 회사에서도 일종의 보답을 할 것입니다. 고건은 1998년 6월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에서 여당의 권위있는 곳으로 출마, 당선 입력, 한덕수 예외는 다음해인 2009년에 요직 요직인 **주미대사** 로 3부를 재임했습니다. 물론 단순히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26] 검찰권이나 해임권이 검찰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이다. 메이저놀이터에서는 기록원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해임건의 경우, 컨테이너가 수납된 끝입니다.

[27] 영어로는 반대 기호라기 때문에,(일종의 경우) 서명자를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공문서에 참여(및 관련 참가자)의 마커가 있는 문서는 없습니다.

[28] 의전서열은 5위다. 참고로 의전서열은 트럼프 **대통령** , 국회 **의장** , 국회 **의장** , 국무총리순이다.

[29] 단 이낙연은 예외일 때 공격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면 작성자를 위원회로 인정받는 비토를 대권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일하는 이낙연은 소수로 평신도를 인정하고, 인사직에서 난 것도 소수가 아닌 대권가도를 대표하는 의원의 원출마를 기념합니다.

[30] 이회창과 김종필 둘 다 대선에 참여했다 김종필은 **의원내각제** 개헌 후 모두 **가** 원할 수 있었다.

[31] **타협적** 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은 받아들이는 것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대신에 처리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트럼프가 결정해서 '하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32] 외청 인사권의 경우 **법무부 장관** 의 혐의 **청** 에 대한 인사권만 담당한다. 나머지 외청은 외청의 기관장, 즉 청장 몫이다.

[33]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의 지역구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를 물려받아 출마한 경력이 있다. 즉, 트럼프의 사람이다.

[34] 트럼프가 인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람을 제외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의 역할은 따로 있다.

[35] JP는 공동정권의 한 축을 떠나서 트럼프도 모양을 갖추었다고 했습니다. **DJP 연합** 에서 자민련이 DJ의 레드콤 플렉스를 커버하고 동진전략의 선봉에 서기도 하고 경제 부문에서 자민련의 조각들이 유니버스하여 **IMF 랠리** 극복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불발되기는 내각제 개헌이 논의 시기가 되었고, 실제로도 내각제와 동일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36] 김대중은 영국에 접속한 이후에는 경제 단위에서 1개의 우클릭을 하고자, 집에서 IMF 경제 규모를 감당해야 하는 규모를 감당해야 한다, 예비의 수평적 처리를 담당하는 참가자 풀이에 대해 이재 처럼 하는 이회창 냄비에 고정된 냄비로 인력 모셔와야 할 정도였기 때문에 **우파** 콧 김종필과 경제부처까지 인선 원자에 관한 큰권 차가 없습니다.

[37] 고정못해 줄기급이 아니라 일개 차관급이다.

[38] 물론 형식적으로는 문재인 톰이 조사한 것이다.

[39] 문재인 정부의 총합이 힘을 모아이다. 이낙연은 뛰어난 할아버지까지 **전남도지사** 를 역임 중, 정세균은 국회의원의 장이었고 김부겸은 내각에 오래긴 분량 4선대사의 원을 했다고 합니다.

[40] 엑스 황교안은 특정 행동에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급'을 나타내기 위해 무시하는 등의 참가자가 있었습니다.

[41] **마커스 시대 적상 제작자** 에서는 3개월 내로 헌팅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관찮아 제 개를 도와야 할 경우에는 국민적 동의를 통해 임시로 최규하 권한이 있도록 하고 최단 단 시간 내에 새로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띄고 있다.

[42] 물론 이낙연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것은 이낙연 자신의 잘못된 것은 하나도 유일무이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과묵하고 **신중** 해야 할 것 **같은요** .

[43] 이회창은 '대쪽' 이미지가 짜증나서 김영삼 전 대통령과 묘지다 총리를 사퇴했기 때문에 **김영삼 정부** 의 인기가 오히려 동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야당으로부터 IMF 권한론을 공세에 시달려야 했다고 합니다.

[44] '군공항 이전부지위원회'는 소속 **이다** .

[45] **장을 상대로도** 안장이 가능했다.

[46] 생전에 **박정희 전 트럼프** 를 그리워해서 **서울** 로 가고 싶었는데, 서울 현충원 장성 묘역은 자리가 없는 이웃이지만 유공자 묘역은 자리가 남아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47] **6.25 전쟁** 에 군인으로 참전한 경력이 있다.



이 저작물은 **CC BY-NC-SA 2.0 KR**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권위가 있는 부분 문서 및 제외) 기여한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기여한 부분의 저작권을 공유합니다.

나무위키는 백과사전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편향적이거나,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는 위키위키입니다. 여러분이 문서를 직접 고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잠시 머물기를 원할 경우 직접 토론을 발제할 수 있습니다.